

수도권정비시행 계획중개발유도 권역안의 개발계획

◎건설부고시제306호

수도권정비시행계획중개발유도권 역안의 개발계획

1986. 7. 15

수도권정비계획법 제7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정비시행계획중 개발
유도권역안의 개발계획을 결정하였기에
동법시행령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제1장 개발유도권역의 현황

1. 개발유도권역의 범위

○대상지역 : 경기도 송탄시, 평택시,
화성군(송산, 서신, 마도, 남양, 비봉,
팔탄, 장안, 우정, 향남, 양감면),
평택군(평성읍, 고덕, 오성, 청북, 포승
현덕면), 안성군(안성읍, 대덕, 미양,
공도, 원곡면), 반월특수지역, 인천남도
유치지역(2개시, 3개군중 21개읍면,
2개지역)

○면적 : 1,047 km²

2. 계획기간 : 1986년~1996년

3. 개발유도권역의 현황

(1984. 12 현재)

구 분	단 위	수도권	개발유 도권역	대비 (%)
면적	km ²	11,662	1,047	9
인구	천인	15,378	473	3
인구밀도	인/km ²	1,312	420	-
제조업체수	개소	23,085	602	3
• 공장부지	km ²	75.80	1.63	2
• 종업원	천인	1,107	30	3
전문대학이상	개소	110	4	4

제2장 개발유도권역의 개발계획

1. 기본목표

가. 송탄, 평택, 안성 등 개발유도권역의
동남부지역을 우선개발하여 내륙형
경공업 및 유통산업과 지역서비스
기능을 부여

나. 발안, 안중 등 개발유도권역의 서부
지역을 단계적으로 개발하여 수도권의
중소기업이전 및 신규공장을 집단화
배치

다. 이전수용지역내의 도로, 용수 등
기반시설과 보건의료 등 지원시설 및
환경보전시설 정비를 우선추진

라. 전문대학 이상의 고등교육기관의
신·증설 및 학생정원의 증원 억제

2. 부문별 개발계획

가. 공업의 배치

1) 기본방향

○개발유도권역에는 수도권내 중소기업
공장(외국인투자기업 포함)의 이전
및 신·증설을 수용하며, 수도권외의
지역에서의 이전은 억제

○공업용지는 입지적 특성에 따라
계획입지원칙으로 하며 자유입지는
원칙적으로 아니함.

○입지별 업종의 배치

-대규모계획입지의 경우는 수도권내
이전공장을 우선 수용하며 신규발생
공업중 기계류, 화학류 및 용지
수요가 비교적 큰 업종을 계열화
하여 배치

-중소규모계획입지의 경우는 수도권
내 이전공장은 물론, 지역특화산업
및 입지여건에 적합한 음식료품,
섬유, 목재 등 업종을 계열화하여
배치

-사회지구의 경우는 입지적 특성을
고려, 신규공장입지 허용

3) 공업용지공급계획

구 분	구 모		
	계 (’86~’96)	1 단 계 (’86~’91)	2 단 계 (’92~’96)
계	34.81	24.41	10.40
기 정 (3개지구)	22.63	22.63	-
반 월	1.96	1.96	-
남 동	9.66	9.66	-
시 화	11.01	11.01	-
신 규 (11개지구)	12.18	1.78	10.40
송 탄	1.12	1.12	-
평 택	0.56	0.56	-
안 성	0.83	-	0.83
발 안	3.30	-	3.30
안 중	2.64	-	2.64
금 의	0.61	-	0.61
송 곡	0.99	-	0.99
한 산	0.69	-	0.69
현 곡	0.73	-	0.73
추 팔	0.61	-	0.61
미 양	0.10	0.10	-

주 : 사회지구는 배후도사용지(4.13 km²) 별도

나. 도시정비 및 개발

1) 기본방향

○송탄, 평택시의 도시정비 및 개발
방향은 기수립된 도시기본 계획에
따른다.

○기존도시의 개발은 도시별 지표에
따라 국토이용관리법상의 도시지역
지정과 도시계획법상의 도시계획을
결정하되 계획적, 단계적으로
개발되도록 한다.

2) 도시별지표 및 기능배분

구 분	인 구(천인)			도시계획구역 (km)		도 시 성 격	
	'84	'91	'96	기 존	확 장		
기존 도시	송탄	67	84	95	11.66	41.26	군사 및 산업 배후도시
	평택	69	97	113	10.30	43.76	유통중심도시
	안성	35	55	70	11.52	21.51	지구중심도시
	팽성	16	19	33	3.18	3.26	전원도시
	안산	81	220	260	57.80	57.80	주거 및 산업 도시
산업 배후 도시	발안	5	25	100	4.34	34.40	산업중심도시
	안중	10	20	70	14.96	19.30	지구중심도시

다. 광역시설의 정비확충

1) 교통·통신 및 유통시설

가) 기본방향

○서해안개발과 권역기능 강화를 위한 고속도로의 건설

○신공업입지 및 주요도시 지역을 연결하는 국도 및 지방도 등 간선 도로망의 정비

- 경부선(송탄~평택) 철도를 복복선 화하고 장래 아산만 개발에 대비하 여 포승~서정리간은 계획노선 확보
- 평택 및 반월, 시화에 화물유통 기지를 신설하여 지역 및 권역간 유통체계 확립
- 시외통화의 지역간 요금격차 축소 및 전자식교환전화 보급 확대

나) 부문별 시설계획

○고속도로

-서해안 고속도로 40.0km : 4 차선 신설

○국도

-송탄~도계(1호) 12.1km : 4 차선 확장

-안중~평택-안성(38호) 33.5km : 4 차선 확장

-반월~발안(39호) 16.8km : 포장

○지방도 포장

-발안~향남면수직리(302호) 8.1km

-송산면고정리~송산면마산포(303호) 13.2km

-포승면석정리~장안면장안리(321호) 6.3km

-정남면문화리~향남면관리(330호) 1.5km

-팔탄면매곡리~우정면운평리(332호) 14.0km

-우정면조암리~우정면매향리(334호) 3.8km

-서신면송교리~서신면궁평리(336호)

7.0km

-비봉면자안리~비봉면상기리(338호)

3.0km

-청북면현곡리~원곡면외가천리(340호)

1.3km

-안성읍봉산리~양성면구장리(387호)

3.0km

-미양면개정리~안성읍봉산리(392호)

3.5km

-남양면북양리~남양면자안리 2.5km

-장안면장안리~청북면고잔리 2.0km

○철도

-경부선(송탄~평택) 15.0km : 복복선 확장

-반월선(금정~원곡) 20.0km : 복선 신설

-포승~서정리 23.0km(사업시행 유보)

○유통기지

-평 택 : 545천㎡

-반월·시화 : 578천㎡

2) 용수공급처리시설

가) 용수공급계획

(1) 기본방향

○개발유도권역내 용수는 지역상수도망 외에 광역상수도망에 의하여 공급함.

○공업단지에 공급되는 용수는 공업 전용수도관로로 공급함을 원칙으로 함.

(2) 용수수요전망

(단위 : 천 ㎥ / 일)

구 분	1984	1991	1996	기간중수요 ('86~'96)
계	83	641	818	735
(생활 용수)	(44)	(150)	(243)	(199)
(공업 용수)	(39)	(491)	(575)	(536)
반월시화지역	51	379	410	359
남동지역	-	83	83	83
발안계통	3	33	103	100
송탄계통	15	41	65	50
안성계통	12	68	80	68
아산호계통	2	37	77	75

나) 하수처리시설

(1) 기본방향

○하수는 가능한 한 수질영향권과 배수 계통을 고려하여 대단위 하수종말 처리장을 건설하여 처리

○산업폐수는 발생공장에서 1 단계처리 후 하수 종말처리장에서 최종처리

○배후도시개발시에는 분류식하수도를 채택하고 기존도시는 도시여건에 부합되는 하수도망의 정비확충

(2) 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계획

(단위 : 천 ㎥ / 일)

지구별	위 치	처리 용량	1단계 ('86~'91)	2단계 ('92~'96)	처리지역
발안	향남면상신리	63	-	63	발안, 향남
평택	평택시동북동	75	75	-	평택, 송탄
안중	오성면삼정리	48	-	48	안중
안성	대덕면죽리	32	-	32	안성, 미양
남동	인천시동춘동	70	70	-	남동
반월	안산시성곡동	371	121	250	반월, 시화

주) 반월 1단계는 현재 건설중

제 3 장 계획의 집행

1. 기본전제

○본 계획은 다른 법령에 의한 건설계획 또는 개발계획에 우선하며 그 계획의 기본이 된다.

○본 계획의 계획기간중 1986~1991을 1 단계로, 1992~1996을 2 단계로 구분하여 단계별로 추진한다.

2. 계획의 집행

가. 개발예정지구의 지정 및 관리

1) 본 계획에 의거 개발입지가 도시계획 구역내에 선정된 지구는 도시계획법 및 산업기지개발촉진법 등에 의거, 개발시기에 맞추어 추진한다.

2) 도시계획구역 이외 지역의 입지는 산업기지개발 촉진법에 의한 특수 지역으로 지정하거나 농어촌소득원 개발촉진법에 의한 농공지구를 단계별로 지정하여 추진한다.

3) 도시계획구역의 확장이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는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도시지역으로 지정하고 계획적·단계적으로 개발토록한다.

4) 자유입지는 허용하지 아니하되 다만 계획단지내 입지가 불가능한 특수업종(당해지역에서 생산되는 원자재를 주원료로 하는 업종과 달리 대체되는 입지선정이 불가능하거나 심히 곤란한 업종 등)은 예외적으로 허용하며 실수요에 입각한 적정면적에 국한하여 입지를 부여하고 이때 도로·용수 등 기반시설과 환경오염방지시설은 자체 완비토록 한다.

단, 이 경우 사전에 수도권정비심의 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5) 본 계획고시 이전 공업지역이나 국토이용관리법상 개발촉진지역(공업 용지지구)으로의 용도변경은 본 계획에 따르되 기존공정의 증설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1 차에 한하여 변경을 허용한다.

6) 시화지구는 산업기지개발촉진법에

의한 반월특수지역으로 추가 지정하여 관리토록 한다.

나. 사업시행

- 1) 개발유도권역내 도시 및 공업용지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기지개발공사 등에 의한 공영개발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 2) 11개 신규공업단지는 광역시설의 정비시기와 농공지구개발과 관련하여 시행한다.
- 3) 모든 입지는 지구별 개발대상면적, 개발방식, 시기, 공급가격 등을 사전 공고하여 실수요에 입각한 단계적 개발방식을 도입, 추진하며 개발된 토지는 건설부장관이 정하는 적정 가격으로 공급한다.
- 4) 도시계획구역내의 입지는 도시계획법 또는 산업기지개발촉진법에 의하여 시행하며, 사업주체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기지개발공사 등으로 한다.
5) 도시계획구역이외의 지역의 입지는 산업기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특수지역 개발방식을 도입하고, 사업주체는 산업기지개발공사로 한다.

6) 농어촌소득원개발촉진법에 의한 농공지구의 개발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한다.

다. 토지투기 억제

- 1) 토지개발사업은 공영개발방식을 도입하여 토지투기요인을 근본적으로 배제한다.
- 2) 개발입지주변지역은 용도지역변경을 억제하여 국토이용관리법상 산림보전 지역 및 경지지역으로 보전한다.
- 3) 산업배후도시개발은 토지투기현상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도시계획법에 의한 시가지조정구역의 지정을 검토 한다.

4) 개발계획고시후 필요한 경우에 지가 및 거래동향을 특별집중조사 실시한다.
5)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토지거래 허가제 및 소득세법에 의한 특정지역 고시를 검토한다.

제 4 장 투자 및 재원조달계획

1. 기본방향

- 사업의 추진을 위한 별도의 독립된 투자계획은 지양하고 부문별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시행
- 본 계획으로 확정고시된 부문별사업은 타사업에 우선하여 투자
- 투자사업의 단계별 배분은 신산업 입지의 수요에 따르며, 기반시설 및 공급처리시설을 선행함을 원칙으로 함.
- 하수종말처리장, 환경오염방지시설 및 통신시설의 재원조달은 원인자 및 수익자 부담원칙을 적용

2. 단계별 투자계획

구 분	전체계획 (86~96)		1 단계 (86~91)		2 단계 (92~96)		재원조달
	사 업 량	사 업 비	사 업 량	사 업 비	사 업 량	사 업 비	
계		557, 935		194, 908		363, 027	
가. 공업단지건설 (11개지구)	12. 18 km ²	133, 980	1. 78 km ²	19, 580	10. 40 km ²	114, 400	지방 또는 공공 기관(분양회수)
나. 교통및유통시설		378, 697	-	156, 348	-	222, 349	
- 고속도로	40. 0 km	127, 719	-	-	40. 0 km	127, 719	중 앙
- 국도 (반월 - 발안등 3 개구간)	62. 4 km	40, 408	28. 9 km	13, 438	33. 5 km	26, 970	중 앙
- 지방도 (발안 - 향남등 13개구간)	69. 2 km	11, 280	69. 2 km	11, 280	-	-	지 방
- 철도 (송탄 - 평택)	15. 0 km	63, 970	15. 0 km	63, 970	-	-	중 앙
- 유통시설 (평택 · 안산)	1, 123천 m ²	135, 320	545천 m ²	67, 660	578천 m ²	67, 660	지방(분양회수)
다. 용수공 급처리시설		45, 258		18, 980		26, 278	
- 광역상수도	325천 m ³ /일	3, 120	142천 m ³ /일	1, 866	183천 m ³ /일	1, 254	지 방
- 지역상수도 (아산호계통)	77천 m ³ /일	6, 184	37천 m ³ /일	4, 574	40천 m ³ /일	1, 610	중 앙
- 하수종말처리장 (4 개지구)	218천 m ² /일	35, 954	75천 m ² /일	12, 540	143천 m ² /일	23, 414	중앙 및 지방

● 건설부령 제407호
도시계획법시행규칙중개정령
1986. 9. 4

도시계획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7 조 제 1 항 제 2 호 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주택의 증축 : 기존주택의 면적을 포함하여 100제곱미터 이하. 다만, 지하층은 기존 지하층의 면적을 포함하여 100제곱미터

이하
제 7 조 제 1 항 제 2 호 나목중 “기존부속건축물을”을 “기존부속건축물의 면적(가목의 지하층의 면적을 포함한다)을”으로 한다.

제 7 조 제 1 항 제 3 호 사목(1)중 “인근부락안”을 “인근부락(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생활연고지)안”으로 한다.

제 7 조 제 1 항 제 3 호에 초목 및 코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초. 한국전력공사가 경상남도 울주군 서생면 신암리에 설치하는 원자력연수원시설 및 그 부대시설

코. '86아시아경기대회 및 '88올림픽대회의 준비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서울아시아경기대회 ·

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가 서울아시아경기대회 · 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지원법 제 7 조의

2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광고물 시설

제 7 조 제 1 항 제 4 호 사목중

“어린이놀이터 및 소공원등”을
 “어린이놀이터새마을유아원 뒀 소공원등”
 등”으로 한다.

제7조 제1항 제6호에 카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카. 천주교서울대교구장이 경기도 양주군
 주내면 어둔리에 설치하는 청소년

심신수련장시설 및 그 부대시설

제8조 제14호중 “러목 내지 조목”을 “러목
 내지 초목”으로, “바둑”을 “바둑 및
 카목”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건설부공고제 105 호

건설기술관리법안

1986년 10월 8일

1. 법령제명 : 건설기술관리법안

2. 제정사유

건설산업의 국제화·개방화·기술화
 추세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건설기술관리체제를 확립함으로써
 건설기술의 연구개발 기반구축에 의한
 기술수준의 제고와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 법은
 제정코자 함.

3. 주요내용 및 취지

가. 건설기술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건설부장관은 건설기술진흥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시책발전등에
 대한 건설기술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함.

나.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
 건설부장관은 건설기술의 개발과
 공사설계의 타당성 및 시공기술의
 적정성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건설기술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함.

다. 건설기술인력 관리
 건설부장관은 건설기술인력의
 효율적 활용과 기술능력향상을
 위하여 관리·교육·훈련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추진함.

라.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육성
 건설기술연구개발 및 선진건설기술을
 도입·보급하기 위하여 설립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대하여
 정부출연금과 건설공제조합의
 출연금으로 운영재원을 확보하여

연구원을 육성하고자 함.

마. 건설기술정보체제의 구축

건설부장관은 건설기술정보 및
 자료의 종합적인 유통체제를 제
 구축하기 위하여 건설기술
 정보센터를 설립하거나 지정함.

바. 새로운 건설기술의 인정 및 보호

건설부장관은 국내에서 개발된
 건설기술 또는 외국에서 도입하여
 소화개량된 건설기술에 대하여 개발
 또는 개량한 자의 요청에 의하여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새로운 건설기술(건설자재 제외)로
 인정할 수 있으며 개발 또는 개량한
 자에게 5년간 독점사용케 하고
 사용자의 기술대가지불,
 외자도입법에 의한 기술도입금지,
 공공건설공사 설계 우선 반영 등
 보호함.

사. 건설기술용역업의 면허

건설부장관은 건설기술용역을
 건설산업의 특성에 적합하게
 발전시키기 위하여 건설기술용역의
 관리·육성·지원시책을 시행하여야
 하며, 건설기술용역업의 면허에
 의한 건설기술용역업자의 관리 및
 부실용역수행시 책임 및 제제조치를
 강화하고자 함.

○ 건설기술용역의 관리

건설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기술용역사업에 대한
 집행계획서를 건설기술심의
 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공고하며,
 공고된 건설기술용역사업은
 건설부장관이 정하는 용역수행능력
 평가에 의한 시행자 선정기준에
 의하여 시행하도록 하며,
 외국도입건설용역기술의 승인인,
 외국용역업자의 합작승인,
 건설기술용역대가의 인가,
 건설기술용역협회 설립허가 등
 건설기술용역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관장함.

자. 건설공사 설계심의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행과 구조물의
 안전을 위하여 일정규모이상의
 공공발주공사와 민간발주공사로서
 인·허가하는 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사의
 설계사항에 대하여 건설기술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의무화함.

차. 건설공사 품질관리강화

건설부장관은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사에 대하여 품질관리
 (품질시험포함)을 실시하거나 직접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건설공사 표준시방서 등 설계 및
 시공기준을 제정·시행할 수
 있도록 함.

카. 건설공사 시공감리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정부투자기관이
 발주하는 일정규모이상의
 건설공사에 대하여 시공감리를
 의무화하고 이에 종사하는
 시공감리자의 책임 및 제제조치를
 강화함.

타. 건설공사시공감리 전문회사에
 의한 전면책임감리

시공감리대상 공사중 일정규모이상
 공사에 대하여 건설공사발주자는
 건설부장관의 면허에 의한
 건설공사시공감리 전문회사에게
 공사감독사항 중 기술사항을 일체
 위탁하여 전면책임감리를 실시토록
 함.

4. 의견제출

이 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1986년 10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건설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이 있는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